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상속인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근거 마련〉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73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1. 18.

다.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회서비스의 경우 현행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중 투자상품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계좌 보유 여부만을 안내할 뿐, 보유 주식 수나 잔액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조회서비스의 이용 비율(사망자 대비 상속인 이용건수)도 약 80퍼센트에 이르렀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상속인들이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등).

[illegible]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 6.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제4조의5(상속인등의 거래정보등 제공 신청 등) ①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명의인이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② -----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

-----금융회사등-----

-----<단서 삭제>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는 상속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2.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다만, 명의인의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민법」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다만, 명의인의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민법」 제1001조에 따른 상속인
 5.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
- ② 금융위원회는 상속인등에게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상속인등의 신청자격 확인 및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거래정보등의 신청과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

제7조(과태료) ① -----

-----제4조의3
· 제4조의5제2항을-----

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1999년부터 운영
 하고 있음.

○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¹⁾과 채무²⁾, 공공정보(채납정보 등)³⁾,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상속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정부(행정안전부)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⁴⁾에 따라 사망자 등
 에 대한 금융·국세·4대사회보험료·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조회
 를 통합처리하여 상속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안심상속원스
 톱서비스)를 운영 중임.

1)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2)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
 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3)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보유하고 있는 일정기간 이상 채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임금의 채납(불), 채무불이행자 결정 사실, 신용
 회복지원 정보 등

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국세·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
 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세·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어선·토지·
 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속인이 정부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접수처⁵⁾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연계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내용을 확인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 한편,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중 예금액 또는 채무금액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제공하고 있으나,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만을 통보하고 상세 거래내역 또는 잔액 등은 상속인 등이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같이 투자상품의 보유 주식 수나 잔액 등을 서비스를 통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투자상품의 경우 시세가 매일 변동되는 특성이 있어, 조회 시점과 해당 상속재산 출금 시점의 금액 차이로 인해 상속인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함.

□ 개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정보등에 대한 상속인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5) 시·구 또는 읍·면·동을 의미

제공할 의무를 명시⁶⁾하여 동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투자상품 보유 주식 수나 잔액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동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⁷⁾,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⁸⁾하게 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민법 규정에 따라 명의인의 상속인은 현재도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⁹⁾, 금융감독원의 동 서비스 및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은 상속인의 이와 같은

6) 개정안 제4조의5(상속인들의 거래정보등 제공 신청 등)

② 금융위원회는 상속인들에게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7)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8)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적 권한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영 중임.

-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이 동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중에는 대출정보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이 법에 따른 거래정보등 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대출금의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¹⁰⁾, 금융자산의 거래정보를 의미하는 이 법의 ‘거래정보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¹¹⁾임.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원이나 정부(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서비스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금융실명법」에 별도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 둘째, 개정안은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명의인의 가족 등을 열거하고 있어, 이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대출정보 제공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2014.12.31.)

들 모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를 감안하여 신청권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 제4조의5제1항제1호는 명의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음.

-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동순위로, 이들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됨.

○ 이와 관련하여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상속순위를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인을 규정¹²⁾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정안의 신청

12)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사망자 재산조회) ① 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제3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
2. 「민법」 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민법」 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
3. 「민법」 제1000조의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4.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5.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
6.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② 접수처는 신청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
2. 「민법」 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민법」 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

권자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개정안은 금융감독원¹³⁾이 신청권자의 명의자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금융회사등의 본점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있으나, 그 결과 이 법에 따라 요구하는 모든 거래정보등을 특정 점포가 아닌 금융회사등의 본점에 요구하게 변경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은 거래정보등에 대한 제공 요구가 법의 목적에 맞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¹⁴⁾에만 이를 금융회사등의 본점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

3.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③ 접수처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대리인의 대리인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민법」 제909조의 친권자 또는 「민법」 제928조의 미성년후견인
나.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민법」 제929조의 성년후견인

2. 임의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

13)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이를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탈루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